

부산직할시남구부산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부산직할시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청 안
<p>제2조(과세면제)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 각호의 지방공사 및 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목 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 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 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다음 각호 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비율에 해당 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12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p>	<p>제2조(과세면제)</p> <p>.....</p>
<p>1. 부산직할시 도시개발공사 (신설)</p>	<p>1.</p> <p>2. 부산직할시 주차관리공단</p>